

2026년도 상반기 광주광역시 공무원 통합채용 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상반기 광주광역시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광주광역시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 현황

가. 직무별 채용예정 인원

채용인원	민원상담원	인터넷홍보원	안내원	새일센터 취업상담원	여성긴급 전화상담원	청사미화원	취사관리원
15명	1명	1명	2명	1명	1명	6명	3명

나. 세부 내역

방법	직종	직무	인원	담당직무 내용	근무조건	소속부서
필기 + 서류 + 면접 (6명)	단 순 노 무 원	민원상담원	1명	· 소비자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 소비자 정보 수집·제공 업무 등	주 5일(월~금) 09:00~18:00	경제정책과
	행 정 보 조 원	인터넷홍보원	1명	· 온라인 홍보 채널 운영(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 · 콘텐츠 제작 및 기획(카드뉴스, 영상, 인터뷰 등) · 언론 및 매체 홍보 등	주 5일(월~금) 09:00~18:00	시립미술관
	단 순 노 무 원	안 내 원	1명	· 시립미술관 전시장 작품 안내 및 보호 · 관람객 질서유지 및 전시안내 ※ 미술관 본관 및 분관 등 순환근무	주 5일(화~금) 토요일 중 1일 09:00~18:00	시립미술관
			1명	· 관람객 질서유지 및 전시안내 · 관람객 안내 및 전시실 관리 등	주 5일(화~금) 토요일 중 1일 09:00~18:00	역사민속 박물관
	단 순 노 무 원	새일센터 취업상담원	1명	· 경력단절여성 구인·구직 상담 · 취업연계 여성인턴 지원 · 직업교육 훈련 및 경력단절 예방 · 직장 적응지원 프로그램 운영 · 여성친화 일촌기업 발굴 및 협약 등	주 5일(월~금) 09:00~18:00	일가정양립 지원본부
	단 순 노 무 원	여성긴급 전화상담원	1명	· 폭력피해자 긴급구조 지원(현장출동) · 피해자 신고 접수 및 긴급상담 · 긴급피난처 피해자 지원 및 관리 · 관련기관·시설 연계 및 협력 업무 · 피해자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홍보 등	① 주간근무 또는 ② 교대근무 ① 주 5일(월~금) 09:00~18:00 ※ 긴급상황 발생 시는 주말 및 야간에 근무 가능 ② 4조 3교대 순환근무일 8시간 (오전) 07:00~15:00 (오후) 15:00~23:00 (야간) 23:00~익일 07:00	

방법	직종	직무	인원	담당직무 내용	근무조건	소속부서
서류 + 면접 (9명)	단 노 무 원	청사미화원 ※ 고령자우선 고용직종	1명	· 소방학교 청사 내외부 청소 및 환경 정리 등	주 5일(월~금) 08:00~17:00	소방안전 본부
			1명	· 인재교육원 청사 내외부 청소 및 환경 정리 등	주 5일(월~금) 08:00~17:00	인재 교육원
			2명	· 시립도서관 청사 내·외부 청소 및 환경 정리 (무등·사직산수도서관 순환근무)	주 5일(월~금 / 화~금, 토일 중 1일) 교대근무 · 1조 5:00 ~ 14:00 · 2조 12:00 ~ 21:00 ※ 주말새벽야간 근무 가능자	시립 도서관
			1명	· 중외공원 및 미술관 주변 실외 환경정비 · 각종 쓰레기 및 생활폐기물 수거 및 정리 · 낙엽 청소 및 동절기 도로 제설작업 등 ※ 본관 및 분관(하정웅미술관 등) 순환 근무 가능	주 5일(화~토) 07:00~16:00	시립 미술관
			1명	· 예술의전당 실내·외 청소 및 환경 정비 · 각종 쓰레기 및 생활폐기물 수거 및 정리	주 5일(월~금) 09:00~18:00	예술의전당
	단 노 무 원	취사관리원 (조리)	3명	· 소방서 직할119안전센터 구내식당 음식 조리 및 급식시설 위생관리 등	주 6일(월~금 / 토일 중 1일) · 1조: 06:00~15:00 · 2조: 10:00~19:00 · (공통) 토 또는 일 10:00~19:00	소방안전 본부
				· 소방서 외곽119안전센터 또는 119특수 대응단 구내식당 음식 조리 및 급식시설 위생 관리 등	주 6일(월~토) · 10:00~19:00	

※ 응시자는 하나의 직무에 대하여 응시 가능하며 복수로 응시할 수 없음(중복접수 불가)

- 채용인원이 2명 이상인 직무의 경우, 근무지 배치는 시험성적, 희망 근무지, 주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할 예정입니다.
※ 최종 합격자 등록서류 접수 시 희망 근무지(3순위까지)에 대한 설문 실시 예정
- 최초 배치 이후에도 기관(부서) 간 전보 및 부서 내 재배치·조직개편·업무 분장 등으로 인해 근무 기관(부서)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속기관(부서) 내 전보 및 재배치, 필요시는 광주광역시 소속 기관(부서)로 전보 가능
- 소속 기관(부서)에 따라 근무시간, 근무방식, 휴일 및 휴일근무 요일은 상이합니다. ※ 세부내역 기관별 채용 예정 직무의 근무조건 등 참고
- 담당업무, 휴일·야간·연장근로 등 근무내용·조건·형태 등은 기관(부서) 사정 및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채용 후 각 기관 사정에 따라 교대근무, 조기출근, 휴일근무, 연장근로 등 가능
예)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여성긴급전화상담원의 경우, 채용 후 최초 근무형태는 주간근무(월~금 09:00~18:00)로 하되, 향후 센터 운영상 필요에 따라 교대근무로 전환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가. 신분: 공무원 (민간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

나. 정년: 60세

다. 근무기간: 2026. 7. 1. ~ 정년

라. 임금: 「광주광역시 예산편성 지침」, 「광주광역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 운영조례」, 「임금협약」에 따라 적용 ※ 붙임2 참고

마.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원칙

* 근무지 및 직무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 근무방식, 휴일 등 상이

3

시험 방법

가. 제1차 필기시험

○ 대상직종: 민원상담원, 인터넷홍보원, 안내원, 새일센터취업상담원
여성긴급전화상담원

* 필기시험 면제직종: 청사미화원, 취사관리원

○ 배점 및 문항형식: 과목당 100점 만점, 4지 택1형

직 종	필기시험과목	출제범위	시험시간	난이도
·민원상담원 ·인터넷홍보원 ·안내원 ·새일센터취업상담원 ·여성긴급전화상담원	①일반상식(40문항)	한 국 사(20): 고대사 ~ 현대사 일반사회(20):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40분	고등학교 학력수준

○ 합격자 결정: 매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선정하고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2배수를 초과하여 합격자 결정 가능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 시에 각각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화 확인불가)

나. 제2차 서류전형

- 대 상: 필기시험 합격자, 필기시험 면제직종 응시자
- 심사내용: 거주지, 응시연령, 자격증 등 응시자격 적합여부 서면 심사

다. 제3차 면접시험

- 대 상: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평가내용: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면접평정요소(5개 항목)

- ① 공무원으로서의 자세(20점)
- ② 예의·품행 및 성실성(20점)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20점)
- ④ 창의·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20점)
- ⑤ 직무수행능력(20점)

- 면접방식: 블라인드 면접

※ 이름, 나이, 성별, 출신학교명,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 개인신상정보나 편견 유발 요인 비노출

4

최종합격자 결정

가. 시험단계별 점수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필기시험성적 60퍼센트, 면접시험성적 4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성적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나. 면접시험 평정결과 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8점) 미만의 점수를 평정하거나 면접위원 과반수가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8점)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다.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우대요건, 면접시험 고득점자, 연장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발생, 채용 포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퇴사 및 동종 업무 공무원 퇴사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신속히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순위 성적 우수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 공통요건

- 응시연령: 18세 이상 (2008. 12. 31. 이전 출생자) 60세 미만
※ 단, 고령자 우선 고용직종(청사미화원)은 50세 이상 (1976.12.31. 이전 출생자)
- 성 별 : 제한 없음 ※ 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거주지 제한 (다음 ①과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 가능)
 - ① 202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동일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② 2026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군·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응시 결격사유: 붙임 1의 결격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은 응시 불가

나. 직무별 필수 자격요건

직 무	응시자격 요건
민원상담원	· 소비자상담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새일센터 취업상담원	· 다음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사람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②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단, 빠른 시일 내 직업상담사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여성긴급전화상담원	· 운전면허증 2종 보통 이상을 소지한 자 · 「가족폭력방지법」 제8조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다음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가정폭력, 성폭력 또는 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1366에서 자원봉사 상담원으로 1년 이상이면서 500시간 이상근무한 자

직 무	응시자격 요건
청 사 미 화 원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1~3등급)*를 취득한 사람(장애인은 제외) * 2026.1.1. 이후 발행본
취 사 관 리 원 (조 리)	·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적격판정 을 받은 사람 (구 보건증) ②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직무분야<조리>에 해당하는 자격증(기능사 이상)을 소지한 사람

<참고사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중직무분야 <조리>에 해당하는 자격증

직무분야	중직무분야	기술·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13 음식서비스	131 조리		조리		한식조리	한식조리
					중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복어조리
						조주

다. 우대사항 (※동점일 경우 우선채용)

직무	우대 사항
민 원 상 담 원	· 다음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사람(경합시 ①번, ②번, ③번 순으로 우대)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비자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② 한국소비자업무협회 민간자격 소비자 업무 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③ 소비자학과 졸업자
인 터 넷 홍 보 원	· 디자인, 사진영상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1년 이상 경력자
취 사 관 리 원 (조 리)	· 단체급식 50인 이상 전문회사 또는 학교급식 근무 경험 1년 이상 경력자
공 통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2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해당 우대사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증빙서류(원본 지참)를 서류접수 시 제출해야 함

※ 우대사항 간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①모집직무의 관련 경력 등, ②장애인, ③기초생활수급자 순으로 함

6

시험 일정

구 분		접수기간	방법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① 필기시험 대상직종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인터넷 접수	4.10.(금)	4.18.(토)	4.24(금)
		취소기간				
	서류전형	서류접수	4.29.(수)~4.30.(목)	방문접수		5.8.(금)
	면접시험				5.8(금)	5.19.(화)
② 필기시험 면제직종	서류전형	원서 및 서류접수	3.18.(수)~3.20.(금)	방문 및 우편접수		5.8.(금)
	면접시험				5.8(금)	5.19.(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는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gwangju.go.kr>) 「시정소식-시험인사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며,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합니다.

7

응시원서 접수(기간: 3.18.~20.)

① 필기시험 대상 직무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https://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된 문의 : 인터넷원서접수센터(☎1522-0660)

-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09:00부터 마감일 18:00까지입니다.(시작-마감일을 제외한 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 접수 취소시간도 동일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은 3.5cm×4.5cm(해상도는 100dpi 이상),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 배경사진, 측면사진 등은 불가)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 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격 제한,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누락·착오 입력 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② 필기시험 면제 직종(청사미화원·취사관리원)

- 원서 및 서류접수: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기간: 3.18.(수)~20(금)
 - ※ 방문 접수처 : 광주광역시청 민원실(1층, 10번 창구)
 - ※ 등기우편 접수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총무과 공무직지원팀
- 접수시간은 근무시간(09:00~18:00)으로 하며 점심시간(12:00~13:00)과 근무시간 종료(18:00) 이후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 회송용 봉투를 동봉하여 우편송부(회송용 봉투에는 등기우표 부착, 수신인 주소와 성명 정확히 기재)

8

시험에 있어서 가산특전(적용 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한 경우)

가.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가산비율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선발인원 4명 이상인 직무 해당)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가산 특전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 시 적용

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면접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가점은 중복적용 할 수 없으며, 둘 이상 해당시 유리한 가점 적용

9

제출서류 안내

※ 필기시험 면제 직종은 응시원서 접수기간(3.18.~3.20.)에, 필기시험 직종은 서류전형 접수기간(4.29.~4.30.) 제출

가. 공통사항 (필수 제출)

-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서식 제1호>
- ② 응시원서 <서식 제2호>
- ③ 이력서 <서식 제3호>
- ④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서식 제4호>
-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서식 제5호>
- ⑥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제6호>
- ⑦ 결격사유 검증체크리스트(서식 제7호)
- ⑧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서식 제8호)

나. 기타사항(해당자에 한함) ※ ①, ②, ③, ⑤ 관련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 ①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유의사항)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근무내용이 일치하는 경력에 한해 경력 인정
- ③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 제출 시 원본 지참(원본은 사본과 대조 후 반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되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원본) 대체 가능
- ④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1~3등급) ※ '26.1.1. 이후 발행본
 - 필기시험대상직무 서류제출기간(4.29.~4.30.) 중 제출 가능, 붙임3 「국민체력100」 체력인증 안내문 참고
- ⑤ 기타 직무별 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사항 증빙서류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효한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중 1개), 컴퓨터용 흑색수성 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09:20)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나.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중복지원, 거주지 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라.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스마트워치, PMP,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마.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예비표기를 한 경우는 해당 문항이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바.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의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필기시험 합격자 중 서류전형에 미응시한 인원이 있을 경우, 필기시험 차순위 성적우수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아.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 원서접수 시 전자우편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 착오 또는 누락에 따른 연락 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차.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허위·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제출한 경우 등은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이 취소되거나 채용이 무효처리 될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광주광역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카. 해당 채용직무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을 시에 최종적으로 채용이 결정됩니다.
- 타. 원서접수 인원이 채용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때는 해당 직무에 대해 추가 모집 공고 및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파. 선발 결과 최종 불합격한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 일체를 반환 받으실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을 합격자 공고 시 상세히 안내합니다.
- 하.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응시자는 『【붙임 4】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광주광역시 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 총무과 공무원지원팀 ☎ 062-613-2871

○ 「광주광역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내에 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개별 법령 참고

○ 2026년 기준 연고정급 총액

- 구성항목: 기본급, 급식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정근가산금,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단위 : 원)

호봉	직무		
	민원상담원	인터넷홍보원	취사관리원
	안내원	새일센터취업상담원	
	여성긴급전화상담원	청사미화원	
1	34,397,470		35,397,780
2	34,593,110		35,600,250
3	35,300,070		36,331,890
4	35,653,670		36,697,730
5	36,090,230		37,149,520
6	37,080,290		38,165,730
7	37,931,890		39,047,060
8	38,963,520		40,114,710
9	40,449,070		41,652,220
10	41,907,340		43,161,380

○ 기타 수당: 요건에 따라 해당자에게 지급

수당 항목	지급 요건
가족수당	- 지급기준: 부양가족 4인 이내(자녀의 경우 4인을 초과하더라도 수당지급) - 배우자: 4만원, 기타가족 2만원 - 자녀: 첫째 5만원, 둘째 8만원, 셋째 이후 12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	- 매년 연말에 미사용연가일수분에 대한 수당 지급 (연가 일수는 근로기준법 적용)
휴일근무수당	- 통상시급×휴일근무시간×150%
안전관리수당	- 선임된 안전관리자(정 20만원, 부 10만원)

※ 2025년도 임금협약 기준이며, 향후 임금협약에 따라 월 급여 수준 등은 달라질 수 있음

※ 이 외에도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복지포인트 등이 있음

붙임 3**「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 안내**

시행목적: 기초체력을 갖춘 우수 공무원 인력 확보

인증대상: 청사미화원 **※ '26.1.1. 이후 발행본**

※ 기초체력이 필요한 3개 직종에 검사항목 체력수준 상위 70% 이상자인 1~3등급 인증자만 응시 가능

【 「국민체력100」 등급체계 】

○ (1등급) 상위 30% 수준(활력적이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체력 수준)

○ (2등급) 상위 50% 수준(활발한 신체활동 참여에 필요한 체력 수준)

○ (3등급) 상위 70% 수준(최소한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체력 수준)

※ 성별·연령별 건강관련 체력검사 항목별 백분위와 운동관련 체력검사항목별 백분위 등 적용

「국민체력100」인증서 개요

○ 주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https://nfa.kspo.or.kr/>)

○ 검사장소: 광주시 및 전국 소재 체력인증센터

○ 검사항목: 체격(신장, 체중 등), 건강체력(근력 및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운동체력(민첩성, 순발력)

○ 시 간: 1인 50분 내외 **※ 사전예약(홈페이지/전화) 필수**

○ 비 용: 무료(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시행)

○ 검사결과: 측정 당일 국가 공인 인증서 발급(1~3등급)

※ 관내 체력인증센터(5개소)

센터명	운영요일	운영시간	주소	연락처
서구 (광주)	월~금	09:00 ~ 17:00	서구 경열로 33 (농성동) 서구보건소 4층	062-350-4566
KSP0 광주	월~금	09:00 ~ 18:00	서구 금화로 240 (풍암동) 광주월드컵경기장 2층 KSP0광주체력인증센터	062-710-7336
북구 (광주)	월~금	09:00 ~ 18:00	북구 첨단연신로29번길 15 (연제동) 북구종합체 육관 1층 북구체력인증센터	062-716-6100
동구 (광주)	월~금	09:00 ~ 17:00	동구 필문대로 309 (서석동) 조선대학교 체육대 학 5층 동구(광주)체력인증센터	062-230-7419
광산	월~금	09:00 ~ 18:00	광산구 첨단강변로 76 (산월동819-8) 첨단다목 적체육센터 (주차장 안내 -> 첨단생활체육공원 주차장 3)	062-955-9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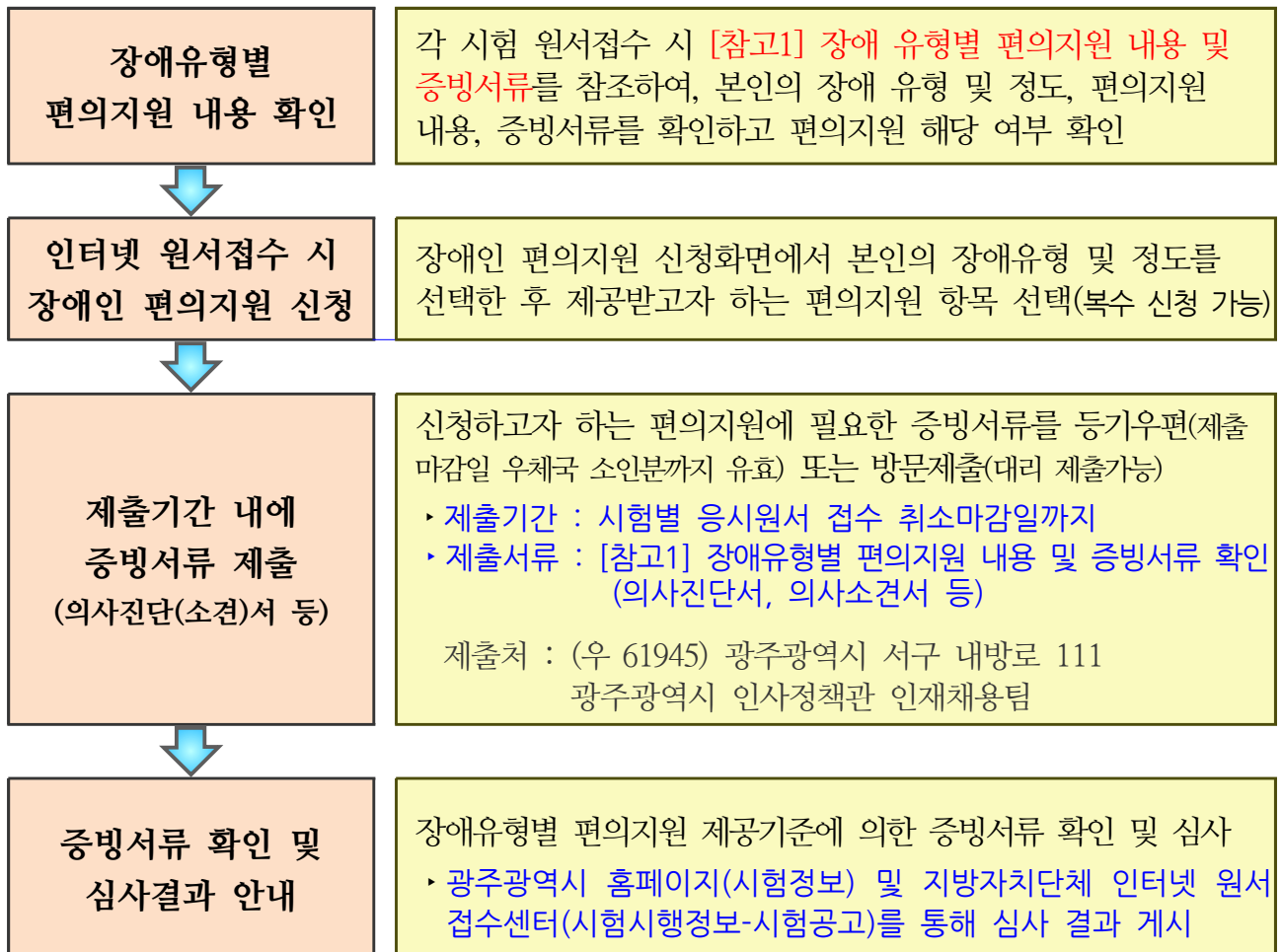
붙임 4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 편의지원 제공대상

- 2026년도 광주광역시 공무직 통합채용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현실적으로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사람
- 기타 특수·중복 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 및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지원이 필요한 사람**

□ 편의지원 신청절차



□ 편의지원 제공 관련 유의사항

- 가. **[참고1]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편의지원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복수 신청 가능)
-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참고1]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의사진단(소견)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 기재)
- 나. 시험시간 연장, 점자문제지, 음성지원 S/W 탑재 컴퓨터, 대필 등 편의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수험생 및 임신부는 원서접수 시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을 선택 및 신청해야 합니다.
- ※ **점자문제지·답안지, 확대·축소문제지 및 음성지원 컴퓨터는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에 한하여** 제공 가능함
- 다.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4년 이내 발급 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 다만,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됩니다.
 -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의료정보] → [병원·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 라. 기존 우리시 임용시험 시 증빙서류를 제출한 수험생의 경우 구비서류 제출 면제 (단,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해당 서류 발급일이 당해 시험 원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4년 이내여야 함)
- 마.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원서접수 시 안내할 예정이며,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인사정책관 인재채용팀(☎ 062-613-6284, 6285)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2026년도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장애유형 및 정도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비고	
지체장애	상지	공 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선택형 시험] 답안지 대필	-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기존 4~6급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기존 1~6급	
뇌병변장애	공 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선택형 시험] 답안지 대필	-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의사 진단서 (원본)	기존 4~6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
시각장애	공 통		·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7배) · 음성지원컴퓨터 ·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	기존 1~2급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의사 진단서 (원본)	기존 3급 2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기존 3급 1,2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7배) · 음성지원컴퓨터 ·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사용자)	의사 진단서 (원본)	기존 4급 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기존 4,5급 1호
		· 두 눈 시야가 각각 정상 시야의 50% 이하로 감소한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기존 5급 2호
	기타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		·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검토 후 안내
		임신부		· 높낮이 조절 책상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의사 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원본)
과민성대상·방광증후군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의사 진단서 (원본)		

* 해당 항목 장애유형(기등급 등)의 조회 및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 150%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 *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2종류 중 택1
- * 축소문제지 : A4 규격의 82%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게 한하여 신청

※ 화장실 사용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됩니다.

※ 일부 과목의 경우 점자문제지 및 음성지원 컴퓨터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2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1.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불인정**
- ※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로 증빙 가능함

2. 발급일자 : 당해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4년 이내 발급(원본)

- ※ 해당 일정은 예정일이며,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아래 3가지)

- ① 장애유형 및 정도(등급)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시각장애의 경우, 시력 또는/및 시야각 명기
-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원서접수 시 신청내용과 의사진단서(소견서) 기재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의함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문 】

장애유형	정 도	예 시	※①~③ 반드시 기재
시 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① 장애유형 및 정도: 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류 장애인 - 시력/시야: 좋은 눈 0.07,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 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됨 ③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 점자문제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① 장애유형 및 정도: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시력/시야: 나쁜 눈 0.02이하, 좋은 눈 교정시력 0.3이하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뇌병변 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① 장애유형 및 정도: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증상: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 손상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 시험 시 문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 점자문제지	
	기타	① 장애유형 및 정도: 특수 및 중복장애 보유자 - 증상: 편안 약시와 無수정체안으로 인한 눈의 운동장애 등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단, 장애판정을 받은 자에 한함)	

- ※ 시험시간 연장, 대필 등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소견서 불인정)**